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2019-80호
2019년4월29일(월)

여수시보

시정지표

- 1. 시민공감
- 1. 균형있는
- 1. 사람중심
- 1. 품격있는
- 1. 살기좋은
- 감상나눔
- 동생문화
- 정주환
- 시정지표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기 타】

○여수시 조례 제2019-1041호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정개정조례

회								
관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19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4 월 29 일

여 수 시 장 권 2 봉 

여수시 조례 제1401호

붙임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에 관
한 세부 계획 수립
2.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재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주무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대표
2. 여수·순천 10·19사건 순직 군·경 유족 대표
3. 여수시의회 의원
4. 언론인, 법조인, 대학교수
5.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재정상황과 업무추진 등을 감독하고 검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
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각종 위령사업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위원 중에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각종 위령사업의 기획·추진 등 실무업무를 추진하며, 회의결과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보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위원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등) ① 시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사업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민간사회단체가 대행할 경우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지원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 --.</p> <p>제6조(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에 따른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에 관한 세부 계획 수립 2.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재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관련 주무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p>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 대표

2. 여수·순천 10·19사건 순직 군·경 유족 대표

3. 여수시의회 의원

4. 언론인, 법조인, 대학교수

5.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재정상황과 업무추진 등을 감독하고 검사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신 설>

-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5. 위원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경우
- 6.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
 관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신 설>

-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
 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 설>

-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
 기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신 설>

- 제13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각종 위령사
 업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

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위원 중에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각종 위령사업의 기획·추진 등 실무업무를 추진하며, 회의결과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경비의 보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위원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포상 등) ① 시장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